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23. 9. 20. 규칙 제1648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」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관리자의 지정) ① 「안양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의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.
 -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제3조(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)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기업출납원: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과장
 - 2. 수입원: 수입담당주사 또는 담당자
 - 3. 지출원: 지출담당주사 또는 담당자
 - 4. 자산출납원: 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
 - 5.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: 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
 - 6. 분임자산출납원: 분임자산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
 - 7. 일상경비출납원: 일상경비출납담당주사 또는 담당자
- 제4조(준용규정)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안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